

북극항로 개척 및 거점항만 지정·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김정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820
----------	-------

발의연월일 : 2025. 9. 9.

발 의 자 : 김정재·이양수·김위상
김승수·박충권·조지연
김기현·성일종·추경호
임이자·최수진·이상휘
의원(12인)

제안이유

최근 잦은 국제 분쟁으로 기존 해상 항로의 불안정성 심화 및 물류 비용 상승과 수출입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지리경제학적 이점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미래 신성장 동력 산업을 확보하고, 동북아 물류 중심기지로 도약하기 위한 글로벌 해운 공급망의 다변화가 필요함.

특히 기후변화 가속으로 북극해 해빙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북극항로를 활용한 새로운 해운 공급망의 가능성이 확대됨에 따라 국제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삼면이 바다인 지정학적 이점을 지닌 우리나라는 복합 기능을 기반으로 유기적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항만을 권역별로 거점항만으로 지정·육성하여 북극항로 해상물류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이에 북극항로 개척 및 거점항만 지정·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

하여 범정부 차원의 북극항로위원회를 신설하고 부처 간 협력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권역별 거점항만 육성을 통하여 북극항로의 실질적 활용을 위한 체계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하여 국제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북극항로 개척 및 거점항만 육성 기반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략적으로 국가의 이익을 확보하고 국제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한편, 나아가 지역균형 발전 및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해양수산부장관은 북극항로개척 등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북극항로 개척 및 거점항만 지정·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 다.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북극항로 및 거점항만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안 제6조).
- 라. 북극항로개척 등에 관하여 관계 부처 간 의견을 조정하며 기본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북극항로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7조).
- 마. 해양수산부장관은 북극항로를 통한 국제 해상물류 및 해양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항만의 지정학적 위치, 항만의 규모 및 하역능력 등

을 고려하여 권역별로 거점항만을 지정할 수 있음(안 제8조).

바. 정부는 북극항로개척 등을 지원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개발 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9조).

사. 해양수산부장관은 북극항로에 필요한 해외동향 및 관련 데이터의 구축·제공, 해빙 현황 및 항로 안전 정보 제공 등을 위하여 북극해운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안 제10조).

아. 북극해운정보센터는 북극항로 및 극지 관련 정책·기술 개발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북극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음(안 제11조).

자. 정부는 북극항로개척 등을 위한 항만시설, 물류거점, 해상교통관계 체계, 쇄빙선 운영 지원 등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함(안 제12조).

차. 정부는 북극 해역의 오염 방지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북극항로 운항에 적합한 친환경적인 선박을 개발하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북극항로 운항 기준을 마련하여야 함(안 제13조).

카. 국가는 북극항로개척 등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와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해당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안 제14조).

타. 정부는 북극항로의 개척 및 지속적인 확대와 관련 국가 간의 협력 강화를 위하여 관련 기술과 전문인력의 국제교류, 국제행사への 참

가,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국제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안 제15조).

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자 등에게 재정과 금융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음(안 제16조).

하. 북극항로개척 등과 관련된 사업 중 미래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하여 특히 신속하게 추진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국가재정법」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북극항로 개척 및 거점항만 지정·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북극항로 개척 및 거점항만 육성 기반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략적으로 국가의 이익을 확보하고 국제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한편, 나아가 지역균형 발전 및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북극항로”란 북극해를 지나 대서양과 태평양을 잇는 항로로서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북동항로와 북서항로를 말한다.
2. “거점항만”이란 북극항로를 이용한 국제 해상물류 및 해양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항만으로서 물류, 에너지, 조선, 해양과학, 안보 등 복합적 기능을 수행하는 항만을 말한다.
3. “북극항로사업자”란 북극항로 운항, 물류·조선, 해양기술, 에너지 등 북극항로 개척 및 운영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외국 및 국제기구와 맺은 극지 관련 국제 조약을 준수하고 북극항로 개척 및 거점항만 지정·육성(이하 “북극항로개척등”이라 한다)과 관련된

산업 발전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북극항로개척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제5조(기본계획 등의 수립·시행)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북극항로개척등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른 북극항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북극항로 개척 및 거점항만 지정·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본계획 중 북극항로개척등과 관련된 기술 개발에 관한 사항과 기반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극지활동 진흥법」 제6조에 따른 극지활동진흥기본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북극항로개척등에 관한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북극항로개척등을 위한 추진전략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3. 북극항로 운영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
4. 거점항만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사항
5. 북극항로개척등과 관련한 기반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6. 북극항로개척등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7. 북극항로개척등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기술 개발에 관한 사항
8. 북극항로개척등과 관련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9. 북극항로개척등을 위한 세제·재정·행정 지원 등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북극항로개척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기본계획 수립 시기·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실태조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북극항로 및 거점항만에 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및 그 밖의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북극항로위원회) ① 북극항로개척등에 관하여 관계 부처 간의 의견을 조정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북극항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

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거점항만 지정에 관한 사항
 3. 북극항로개척등과 관련한 관계 부처별 실행계획과 주요 정책의 추진성과 점검 및 정책 조율에 관한 사항
 4. 북극항로개척등과 관련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 발굴에 관한 사항
 5. 북극항로개척등과 관련한 법령·제도 개선 건의에 관한 사항
 6. 북극항로개척등 관련 이해관계자의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북극항로개척등을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외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국무조정실장
 2. 대통령비서실의 과학기술·해양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보좌관
 3. 북극항로 관련 기술·경제·사회 등의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 ④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제3항제2호의 위원이 된다.

⑤ 제3항제3호에 따른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前任)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촉위원은 제5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後任)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권역별 거점항만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북극항로를 통한 국제 해상물류 및 해양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권역별로 유기적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항만을 거점항만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항만의 지정학적 위치
2. 항만의 규모 및 하역능력
3. 선적 화물의 특성
4. 공항·철도 등 교통시설 현황
5. 배후산업의 기능 및 여건
6. 그 밖에 거점항만 지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권역별로 거점항만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권역별 거점항만의 지정·육성에 관한 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

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거점항만 지정의 목표·전략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2. 거점항만 관련 인력·시설 및 인프라 확충에 관한 사항
3. 채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거점항만의 지정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거점항만의 지정·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행정상 특례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거점항만의 지정·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거점항만의 지정·육성을 위한 세부 지정기준 및 지정 절차, 개발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북극항로개척등 관련 연구개발 등) ① 정부는 북극항로개척등을 지원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개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정부는 북극항로개척등 관련 기술을 효율적으로 개발·육성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에 관한 투자를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학계·연구기관·산업계 간의 협의체 구성 및 공동 연구를 촉진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북극항로개척등과 관련된 국내외 연구개발 동향, 시장 동향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조사하여 이를 체계적·종합

적으로 관리·보급하여야 한다.

제10조(북극해운정보센터)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북극항로에 필요한 해외동향 및 관련 데이터의 구축·제공, 해빙 현황 및 항로 안전 정보 제공 등을 위하여 북극해운정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센터의 설치·운영을 그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센터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북극대학원대학의 설립) ① 센터는 북극항로 및 극지 관련 정책·기술 개발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고등교육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이하 이 조에서 “북극대학원대학”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북극대학원대학의 입학자격·교원·이수과정·학위수여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및 그 부속법령(附屬法令)에 따른다. 이 경우 북극대학원대학의 총장은 북극해운정보센터의 장으로 한다.

제12조(인프라 구축 지원 등) ① 정부는 북극항로개척등을 위한 항만 시설, 물류거점, 해상교통관제 체계, 쇄빙선 운영 지원 등 인프라 구

축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북극항로의 안정적 운영과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북극 환경의 특성을 반영한 보험 및 금융 상품을 개발·보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친환경 운항 체계 구축) 정부는 북극 해역의 오염 방지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북극항로 운항에 적합한 친환경적인 선박을 개발하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북극항로 운항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4조(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① 국가는 북극항로개척등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1. 북극항로개척등에 부합하는 전문인력 양성체제 구축
2. 산학 협력 활성화를 통한 인력의 양성
3. 북극항로의 지속적 확대를 위한 미래 유망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4. 북극항로개척등을 위한 현장 전문인력의 재교육
5. 그 밖에 북극항로개척등에 필요한 인력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가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국제협력 강화 등) 정부는 북극항로의 개척 및 지속적인 확대

와 관련 국가 간의 협력 강화를 위하여 관련 기술과 전문인력의 국제교류, 국제행사에서의 참가,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국제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6조(북극항로사업자에 대한 금융 및 세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고 북극항로사업자에 대한 자금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북극항로사업자에게 재정 지원, 신용보증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 기획재정부장관은 북극항로개척 등과 관련된 사업 중 미래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하여 특히 신속하게 추진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제18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계 기관·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